

의안번호	제 372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8월 30일 (제 313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8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2
----------	-----

제출연월일 : 2012년 8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시 출범에 수반되는 사무를 총괄·처리할 통합추진지원단 설치
- 진천군·음성군 내 혁신도시 추진 전담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정원 5명 증원
- 정원의 총수 조정 : 2,964명 → 2,969명 (+5명) (안 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70명 → 1,475명
- 정원조정 내역 (별표 3)
 - 일반직 5명 증원 (3급 +2명, 4급 +1명, 5급 이하 +2명)
 - 일반직 직급조정 (5급 이하 △1 → 4급 +1)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2,964명”은 “2,96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70명”을 “1,475명”으로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명(3급1, 4급1, 5급2)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본청의 정원 중 1명(3급)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 장 소
총 계	2,969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140	-				
2~3급	1		1			
3급	10	9		1		
3~4급	1	1				
4급	62	42	7	4	7	2
5급이하소계	1,066	-				
별 정 직 계	20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19	-				
연 구 직 계	139	-				
연구관	22	1		19	2	
연구사	117	-				
지 도 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 방 직 계	1,382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372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 교수·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2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70명</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6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75명</p> <p>2. ~ 4. (생략)</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용추계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2,964명 ⇒ 2,969명 (증 5명)
 - 일반직 +5명 (3급2, 4급1, 5급2)
- 추가 소요 비용 : 409,983,680원

(단위:원)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고
총 계	409,983,680	
○ 인건비	326,995,980	
- 기본급	277,894,420	
- 수 당	25,865,800	
- 정액급식비	7,800,000	
- 명절휴가비	9,796,800	
- 연가보상비	5,638,960	
○ 물건비	18,750,000	
- 직급보조비	18,750,000	
○ 이전경비	64,237,700	
- 성과상여금	7,653,950	
- 연금부담금	24,200,000	
- 보전금	14,241,250	
- 퇴직수당부담금	9,820,000	
- 국민건강보험금	8,322,500	